성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6. . .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임대주택법」「지방세법」「지방세법시행령」「조세특례제한법」등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감면조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등(안 제2조)

○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화물자동차에서 2006. 1. 1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화물적재면적 2㎡ 이하인 승용자동차(무쏘픽업, 코란도 밴 등)를 취득할 경우 감면혜택 부여

나.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안 제5조2)

○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토록 함.

- 적용시한 : 2006년 12월 31일 까지

다.「임대주택법」개정으로 인한 조문 정리(안 제11조)

○ 종전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일괄적으로 규정되었던 임대의무기간이 임대주택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분리되어 규정되어 개정사항을 반영.

라.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안 제15조)

○ 여객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50% 경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를 50% 경감하던 것을,

○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별도의 감면규정이 불필요하여 삭제.

마.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안 제16조)

○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토지·지상건축물·주택으로 조문을 수정.

바.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안 제17조)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문구를 수정

사. 유통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안 제21조)

○ 지방세법시행령에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별도의 감면이 불필요하여 "화물터미널" 문구를 삭제

아.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안 제23조)

○ 조특법 제121조의 2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그 범위를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하도록 한바

○ 외국인투자 감면대상 사업을 규정한 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 5, 6, 7의 규정이 추가되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

자.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안 제25조)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을 설치 사업을 영위한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31일 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 **"2005년 12월 31일"**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면서 취득기간을 규정하지 않음.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임대주택법」「지방세법」「지방세법시행령」「조세특례제한법」「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 신·구문 대비표 : 붙임과 같음.

6. 입법예고결과 및 참고사항

○ 공고기간 : 2006.2.28-3.20(21일간),2006.3.20-4.10(22일간)

○ 공고장소 : 군·읍면게시판,군공보 및 군청홈페이지

○ 공고결과 : 다른의견없음.

성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제2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12월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제5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제1항 및 제2항 단서중 "**「임대주택법」 제12조**"를 각각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 제1호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제2호**"를 각각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5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를 **삭제**한다.

제16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제2항중 "**토지 및 지상 건축물**"을 "**토지·지상 건축물·주택**"으로 한다.

제17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의 제목 "**(재래시장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을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본문 중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의**"를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로 하고, 동조제1호중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을 "**시장정비사업시행용**"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를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로 한다.

제21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중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을 "**창고용**"으로 한다.

제2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제1호의 "**동조제1항제2·제2호의3·제2호의4**"를 "**동조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로하고 제2호중 "**동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를 "**동조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로 한다.

제25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제1항중 "**2005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을 "**취득하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제5조의2 신설규정은 2006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② (생 략) 1.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분류 된 자동차를 제외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 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 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o「자동차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화물적재면적이 2㎡미만인화물)로 변경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등 면제대상에 포함
2. ~ 4. (생 략) ③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신설)	제5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o「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지방의료원이 의료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신설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o 종전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일괄적으로 규정되었던 임대의무기간이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분리되어 규정됨으로 개정사항을 반영.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 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 3. (생 략) 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 ---------- ---------- ---------- ---------- ---------- ---------- ---------- ----------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 ---------- ---------- ----------. 1.----------「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및제2호---------- ---------- ---------- ---------- ---------- ---------- ---------- ---------- 2. ~ 3.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 ---------- ---------- ---------- ----------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 3. (생 략)	1.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 2호 ----- ---------- ---------- ---------- ---------- ---------- ---------- --- 2. ~ 3. (현행과 같음)	
제15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삭 제〉	o 「지방세법시행령」에서 터미널용토지에 대한 분리과세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별도감면 규정이 불필요
제16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②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그 해당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제16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토지·지상 건축물·주택--------- ---------- ---------- ---------- ---------- ----------.	o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명확히 하기위해 토지.지상건축물.주택으로 조문수정
제17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2005. 6. 1. 개정)	제17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 ---------- ----------. 1.시장정비사업시행---------- ---------- ---------- ---------- ----------	o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육성을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문구수정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2.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 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 ---------- ---------- ----------.	
제21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1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 ----------창고용---------- ---------- ---------- ---------.	o「지방세법시행령」에서 터미널용토지에 대한 분리과세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별도감면 규정 불필요
제2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생 략)	제2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현행과 같음)	o외국인투자 감면대상사업을 규정한 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제2호의 5,6,7,이 추가되어 개정사항을 반영.
1.「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 ---------- ---------- ---------- ---------- -------, 동조제1항제2호의2내지제2호의7 ---------- ---------- ---------- ---------- ----------.	
2.「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	2.---------- ---------- ---------- ---------- ---------- ---------- ----------,동조제1항제2호의2내지 제2호의7---------- ---------- ---------- ----------.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 ---------- -----.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25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5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1. ~ 2. (생 략) ② (생 략)	제25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 ---------- ---------- ---------- ---------- ---------- ----------취득하는---------- ---------- ---------- ----------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o 재산세 감면규정 중 취득시한 "2005년 12월 31일" 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면서 취득기한을 규정하지 않음.